

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단계·체계개발단계·양산단계의 각 단계가 통합되거나 일부 생략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·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· 방법) ① ~ ⑦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· 방법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단계 · 체계 개발단계 · 양산단계의 각 단계가 통합되거나 일부 생략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·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.